

Global Leader In Dentistry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 칙 및 규 정



2020. 03. 01.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제 1 편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1
제 2 편 전북대학교 학칙	3
제 3 편 전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21
제 4 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29
제 5 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36
제 6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관리조직 규정	41
제 7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부설기관 규정	44
1. 교육지원실 규정	45
2. 연구지원실 규정	47
3. 치의학임상술기센터 규정	48
4. 구강생체과학연구소 규정	49
5. 치의학평생교육원 규정	52
제 8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상설위원회규정	54
1. 기획평가위원회	55
2. 대외협력위원회	56
3. 발전기금위원회	57
4. 입학전형위원회	58
5. 임상교육협의회	59
6. 교육과정위원회	60
7. 임상교육위원회	61
8. 학생지도위원회	62
9. 홍보출판위원회	63
10. 연구학술위원회	64
제 9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타 규정 및 회칙	65
1. 학장 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66
2. 교수상조회 회칙	68
제 10 편 부록	70
1.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71
2.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79
3. 치과대학 기구표	84

제 1 편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 교육목적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차적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치의학교육 기본과정은 다음 과정을 수료한 자가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1. 치의학과 관련된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이를 임상적 제반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구강악안면질환의 정확한 진단, 치료계획수립, 치료 및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는다.
2. 치과임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환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전문적 의사 소통 능력을 갖는다.
3. 지역사회 구강보건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는다.
4. 수료 후 계속교육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발전하는 치의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고 창의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5.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서의 사명감, 봉사정신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는다.

제 2 편

전북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2장 학교 조직

제3장 교직원과 학무회의 등

제4장 학사운영

제5장 교과의 이수

제6장 학생

제7장 등록금

제8장 특종생

제9장 자체평가

제10장 학칙개정

전북대학교 학칙

개정 20. 03. 01 규칙 제2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북대학교현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조직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전북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자유, 정의, 창조의 정신으로 학문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개발, 교육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학교조직

제 1 절 학교의 장

제3조(총장) ① 총장은 학교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및 학칙이 정하는 행정조직 설치상의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한다.(14.12.16, 19.2.28)

제3조의2(부총장) ① 부총장으로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14.12.16, 19.2.28)

② 부총장은「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할 수 있다.(14.12.16)

③ 삭제(16.11.24)

제4조(총장의 선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접선거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12. 8.24, 18.02.28)

제 2 절 교육조직

제5조(대학 및 대학원 등) ① 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및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를 둔다. 다만,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은 익산시에 둔다.(08. 02.26, 09.02.27, 12.12.21, 14.01.29, 15.05.28, 17.08.02, 19.05.31)

② 공공인재학부는 본부직속으로 두어 운영한다.(09.0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③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두며, 전문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법무대학원, 보건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및 환경대학원을 둔다.(09. 2.27, 10.6.10, 11.12.01)

④ 각 단과대학에 학부 또는 학과를 두며, 학부에는 전공을 둘 수 있으나 학과를 둘 수 없다.(20.01.07)

⑤ 각 대학원의 학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학·석사연계과정 및 대학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09.11.16)

제6조(학부 또는 학과) ① 각 단과대학의 학부(과)의 학생정원은(별표1)과 같다.(07. 9.21, 07.11. 7, 08. 2.26, 09.11.16, 10.10.20, 11.8.26, 11.10.19)

② 각 대학의 신입생은 계열,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모집한다.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학장 및 대학원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다만 특수대학원장은 관련 단과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으로 겸보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의 교육·지도 및 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④ 공공인재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신설 09. 2.27. 12.12.21, 13.05.27, 16.10.18, 17.08.02)

제7조의2(부학장 및 부원장)(신설 19.2.28) ① 각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 부원장은 관련 단과대학 부학장 또는 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② 부학장은 단과대학장을,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장·학과장 등) ①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학부장 및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제1항의 학부장 또는 학과장은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부 또는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③ 학부에 여러 전공이 있는 경우 학부장 외에 별도의 전공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 3 절 행정조직

제9조(처·국의 설치) ① 본 대학교의 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며, 처에 처장, 국에 국장을 둔다.(14.12.16, 19.2.28)

② 각 처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다.(14.12.16, 19.2.28)

제10조(과·부 등의 설치)(19.2.28) 교무처에 교무과·학사관리과를, 학생처에 학생과·취업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과·성과관리부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시설관리과를 두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조직 내에 과에는 과장을, 부·실·단·관·원 및 부설학교에는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07.12.21, 08.02.26, 12.06.25, 14.12.16, 17.12.28, 18.03.29, 19.2.28, 20.01.07)

제10조의2(팀의 설치)(신설 19.2.28)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조직 내에 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행정실 등의 설치) 단과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별표 2)와 같이 행정실을 두되, 대학원에는 대학원교학부를 둔다.(08.02.26, 11.12.01, 14.12.16, 19.2.28)

제12조(기타 조직설치 및 분장사무)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 제14조의8,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에 의한 조직, 기타 하부조직 및 보좌기관 등의 설치·운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로 정한다.(09. 6. 4, 11.2.18, 14.12.16, 16.11.24, 19.2.28)

제 4 절 교육기본시설,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 5 절 산학협력단

제 6 절 학교 기업

제 7 절 발전지원재단

제 3 장 교직원과 학무회의 등

제 1 절 교직원과 명예교수 등

제22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총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 및 행정직원으로서 구분한다.(19.08.01)

-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이중 산학협력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11.12.01, 12.01.26)
- ③ 전임교원은 각 대학의 학과(학부) 또는 부속시설 등에 소속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3~9시간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3. 2. 28)
 1.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은 6시간으로 한다.
 2.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3시간으로 한다.
 3.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6시간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임교원은 9시간으로 한다.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3. 2. 28)
-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신설, 19.08.01)
- ⑦ 강사의 임용·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임용기간, 임금, 교수시간, 복무·근무조건, 면직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9.08.01)
- ⑧ 교직원의 정원관리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변경 13. 2. 28, 19.08.01)

제23조(명예교수 및 겸임교원등)(19.08.01) ①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으며,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교에 겸임·초빙교원, 기금교수, 석좌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9. 6. 4, 11.10.19, 12.01.26, 19.08.01)

③ 산학협력을 전담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12.01.26, 14.10.30)

제 2 절 학무회의

제 3 절 기획위원회

제 4 절 대학인사위원회

제 5 절 교수회와 평의회

제 6 절 교 수 회 의

제32조(구성과 소집 등) ① 각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12.05.18)

②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학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각 대학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다.

④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교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3조(의결 정족수) 교수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심의사항)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다만,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학 및 전과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학과)장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급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35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1.12.01)

②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3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③ 특별학기로 여름학과 겨울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12.02.27)

제35조의1(학점포기) ①(삭제 14.02.20) ②(삭제 14.02.20) ③(삭제 14.02.20) ④(삭제 14.02.20)

제35조의2(특별학기) ① 기초·교양교육 강화 및 선·후수 이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수전공 및 연계 전공 등을 위하여 하기 또는 동기 휴가기간에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12.02.27, 15.09.14)
② 특별학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2.02.27)

제3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14.10.30)

제3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 제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제2학기 수업시작 전까지
2. 동기휴가 : 제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개교기념일 : 10월 15일
4. 국정공휴일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휴가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4.10.30)

제38조(수업 연한 및 조기졸업) ① 각 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과 편입학 후 전공교육 4년),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2년, 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 4년으로 구분하고, 수의예과의 교육과정은 수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서, 치의예과 교육과정은 치과대학에서 관장한다.(개정 2011.8.26, 13.02.26, 14.01.29, 20.0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초과취득 등의 방법으로 졸업학점을 조기 취득하여 졸업요건 충족 및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1년 범위 내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12.02.27, 13.02.26, 16.03.31)
③ 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제83조(졸업요건)규정에 해당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7학기에 조기졸업 할 수 있다.(신설 09.11.16, 12.02.27)

제39조(재학 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 한다.(13.02.26)
② 휴학 기간과 시간제학생 등록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 신설 03.02.26)

제 2 절 입학과 등록

제4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

제41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전형을 거친 자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14.10.30)
4.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5.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자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수의예과 수료자,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치의예과 수료자를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제42조(재입학자격) ① 재입학은 계열별 입학정원을 포함한 입학정원(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제적하였던 학부(과)는 유사학부(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약사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1.07)

②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당연 제적된 자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제43조(편입학자격) ①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입학 정원 외로 제3학년(수의학과, 의학과 및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할 수 있는 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15.02.27)

③ 전적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④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2017학년도부터 4년간 입학정원 내 30퍼센트를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한다.(15.02.27)

제44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업성적증명서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입학자 선발) ① 신입생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병합하여 전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대학별고사의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 실기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취업자, 특기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지역의 우수 인재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재외국민(귀순북한동포 포함),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전형방법과 시일,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범위 및 비율 등은 총장이 따로 따로 공고한다.(15.02.27)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15.02.27)

- ⑤ 편입학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신입생 선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47조(입학절차) ① 합격이 확정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입한 후 소정의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8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등록(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3.02.26, 19.2.15)

-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하며,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토록 한다.(항신설 07. 9. 5)

제 3 절 교내 전학 및 전과

제49조(전학, 전과의 시기 등) ① 제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수의학과.간호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의예과.치의예과.의학과.치 의학과.약학과로의 전학 또는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15.02.27, 20.01.07)

- ② 교내 전학 또는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대학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외국인 유학생의 2학년 진학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70퍼센트 범위까지 이를 허용 할 수 있다.(18.05.28, 18.12.20.)
- ④ 전학.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비율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절차) 전학 또는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관계 학장의 승인서와 이미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첨부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조(재학연한) 교내 전학 또는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52조(과목이수) ① 교내 전학 또는 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학부(과) 소정의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기득학점 중 당해학부(과)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나머지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절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53조(휴학절차)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 급 이상 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3.05.27, 20.01.07)

- ② 병역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자는 입영 전에 학장에게 신고하고 입영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을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3.02.26, 14.06.23, 20.01.0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신설 13.05.27)

제54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해외연수기간,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기간은 예외로 하고, 해외연수 및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기간은 휴학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각각 통산 4학기 이내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13.02.26, 14.06.23, 16.06.16)

- 제5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의 경우라도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②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휴학종료 시기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로 하며 학기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가 있어 4분의 3이상을 수강할 수 있을 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6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7조(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학장의 신청에 의거 제적한다.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6.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7.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제 5 장 교과목의 이수

제 1 절 교과과정

제58조(교과) ① 본교의 교과는 교과목별로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 부전공과목으로 하며, 전공과목은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과 수의예과, 의예과 및 치의예과 학생을 위한 기초필수과목을 둘 수 있다.

- ②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교양과목은 예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11.8.26, 15.02.27, 20.01.07)
- ③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생은 제60조의 이수학점 이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전공필수과목으로 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공필수과목에 가산되는 학점은 전공선택과목에서 감할 수 있다. 다만, 여학생의 실습기간은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10.6.10)
- ④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R.O.T.C.)을 선택하는 경우는 군사학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 ⑤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09.11.16)

제59조(교양 및 전공이수)(20.01.07) ① 교양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예·체능계의 각 계열에서 균형 있게 선택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1.07)

- ② 학생은 다음 제1호의 최소전공을 이수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2호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1. 최소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에서 정한 기본적인 학점을 이수하는 전공
 2. 심화전공: 최소전공 이외,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는 전공
 3.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 이상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4.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5. 연계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가 서로 연계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공
 6. 융합전공: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둘이상의 학부(전공)·학과 또는 국내·외 대학과 서로 융합하여 참여학과 전공의 교과목과는 별도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 ③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42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21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⑤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각 36학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07)
- ⑥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 전공의 이수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07)

제60조(교과과정) ① 각 대학의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11.8.26, 11.10.19, 12.2.27, 15.02.27, 15.09.14)
- ③ 학생은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취득학점 기준에 따라 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삭제 12.12.21)
- ⑤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한다.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과(전공)의 전공필수과목, 전공 선택과목 소정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12.2.27, 16.03.31)
- ⑥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를 복수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 및 법과대학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11.8.26., 14.01.29, 20.01.07)

- ⑦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자의 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며, 기타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⑧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학과는 부전공 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10.6.10, 11.8.26, 14.01.29, 20.01.07)
- ⑨ 부전공과목의 소정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부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에 갈음하여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 ⑩ 일반선택과목은 전공학부(과) 이외의 학부(과)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⑪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4학년 1학기 이후에 본교의 석사학위과정(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양과정에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12.2.27)
- ⑫ 선수,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선수, 후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⑬ 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특별편입학 시행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또는 4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해당학과 편제 완성 연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대체 이수할 수 있다.(18.02.28)

제61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주문식 교육과정, 산학연합동과정, 산업체위탁과정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4.10.30)

-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별표1-1]과 같다.
-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 정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및 운영위원회, 학생의 보호 및 경비 부담,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휴학 및 복학,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등으로 정한다.(신설 14.10.30, 15.12.31)

제62조(공학교육인증) ①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은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①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2.2.27)

- ② 교육과정의 공동운영과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17.08.02)

제 2 절 수 업

제65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각 대학에서 작성,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시간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작성케 할 수 있다.

제66조(수강신청과 승인)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학장에게 수강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대학의 교류학생으로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는 자매결연대학에 수강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일단 승인된 과목은 총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④ 학사과정에 학점이월제를 둘 수 있으며 학점이월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3.08.26)

제67조(수업방식) ① 수업은 학기 중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및 성인학습자반 수업은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다.(16.03.31)

- ② 수업방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6.03.31)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6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3.02.26)

제70조(시험자격)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자는 기말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7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2.2.27)

- ②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D⁰등급 이상은 급제로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12.2.27)

등 급	평 점	비고(100점 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D ⁺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60점 미만

-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0점이 된다.

제72조(성적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성적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다만,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08.12.17, 12.02.27, 15.02.27, 20.01.07)

- 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절 이수의 인정

제73조(학점의 인정)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 ②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 ③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한다.
- ④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의 상한은 학기 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한다.(항신설 07. 9. 5)
- ⑤ 교육과정 개설과목 중 언어교육원에 특별강좌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신설 07. 9. 5)
- ⑥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항신설 08. 5. 27)
- ⑦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고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국가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16.11.24)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① 학생이 본교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국내·외 대학(교)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③ 학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학점의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학년말로 할 수 있다.(11.08.26, 15.02.27)

제7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하인 학과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3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18학점,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와 교직과정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자는 21학점으로 하되,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와 HRC(Honor Student of Residential College) 참여자는 기본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는 매 학기 22학점까지, 직전학기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또는 총장이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4학점(의과대학 의학과는 3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TOPIK3급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10.02.26, 11.08.26, 12.02.27, 15.02.27, 15.09.14, 17.08.02, 18.02.28, 18.12.20, 20.01.07)

② 현장실습, 계절수업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생은 현장실습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이 당해 학년도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07. 9. 5, 단서 신설 10. 2. 26, 16.03.31)

- 제77조(졸업 및 수료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 또는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학과 또는 전공별 졸업학점에 10학점이 추가된다.(10.02.26)
- ②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11.08.26, 15.02.27)
- ③ 각 학년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10. 2. 26, 15.09.14)
1.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학생)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수는 각각 30학점, 60학점, 90학점, 120학점으로 한다.
 2.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3학점, 65학점, 98학점, 130학점으로 한다.
 3.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5학점, 70학점, 105학점, 140학점으로 한다.
 4.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38학점, 75학점, 113학점, 150학점으로 한다.
 5.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각각 40학점, 80학점, 120학점, 1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1학년에서 4학년은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본다.(단서 신설, 20.01.07)
- ④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는 교양과목 및 기초필수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상을 1학기 이상 재이수 하여야 하며, 의과대학 의예과 및 치과대학 치의예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에 이수한 기초필수과목 중 성적이 C⁰이하인 과목을 전부 재이수하여야 한다..(10. 2.26, 11.08.26, 15.02.27, 16.11.24, 19.2.15, 20.04.28)
1. 각 학기에 배정된 기초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신설, 19.2.15)
 2. 당해 학년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신설, 19.2.15)
- ⑤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유급되기 전 취득한 전공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되, 유급된 당해 학년 중에 취득한 성적이 C⁰이하인 전공과목을 전부 재이수 하여야 한다. (15.02.27)
1.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15.02.27)
 2. 전과목 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1.87 미만인 경우(15.02.27, 16.11.24, 18.02.28)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총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성적 등급 C⁰ 미만인 경우 (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는 제외)(15.02.27)
- ⑥ 간호대학 간호학과 2학년 이상의 학생은 제3항에 불구하고 각 학년에 배정된 전과목을 반드시 수강 하되 중도에 수강 취소할 수 없으며,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은 1.75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급된다.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쏘 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12.06.25, 12.8.31)
- ⑦ 간호대학에 편입학한 자 중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인정받지) 못한 자는 편입이전 학년의 모든 전공필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항신설 08.12.17, 12.06.25)
- ⑧ 약학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유급되고,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1.07)
1. 당해 학년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중 2개 이상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당해 학년 전 과목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1.87점 미만인 경우
 3. 당해 학년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 이상이 C⁰ 등급 미만인 경우

제78조(졸업논문 등) ①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과(전공)에 따라 소속 학생에 대하여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과할 수 있으며 그학과(전공) 등은 따로 정한다.

- ② 실기발표는 사전에 공고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발표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발표는 논문작성 제출과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하며, 공동발표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졸업종합시험은 전공과목을 균형 있게 과하여야 하며, 학부(과) 또는 대학 단위의 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과목과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9조(졸업논문 지도교수) ①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학년도까지 학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 수는 10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 전임교원이 부족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0조(졸업논문의 심사) 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의2(평생지도교수제) 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해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 ②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07. 9. 5)

제81조(졸업논문 불합격자)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경우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15.12.01)

제82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서식 1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졸업의 인정과 학위수여)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합격한자로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3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2의 졸업증서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별지서식 2-2의 영문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07. 9. 5, 07.12.21, 08. 2.26, 09.11.16, 12.02.27, 15.09.14)

- ② (삭제 12.12.21)

-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졸업자격인정제 운영에 의해 총장이 별도로 정한(외국어시험, 컴퓨터관련 자격증취득,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자격취득 등)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졸업논문 등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의한 '진로개발 및 상담'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지서식 3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07.09.05, 09.11.16, 12.02.27)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83조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19.2.15)

- ②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위한 운영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0. 2. 26, 19.2.15)

제84조(재학기간 연장) 부전공,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를 위하여 재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등록시에 별지서식 4에 의한 재학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재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학사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본교 발전과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73조 제2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생

제 1 절 학생활동

제8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한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학생지도) 총장은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0조(금지사항)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1조(간행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장학제도

제 3 절 규율과 상벌

제93조(교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과 따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전심전의 학업에 종사하고 교양과 덕성을 함양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94조(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사유 및 절차) ①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과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신설 08. 2.28)
 4.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신설 08. 2.28)
 5.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 ② 징계처분은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상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08. 2.26.)

제9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② 전항의 유기정학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한부 정학을 말하며 무기정학은 30일을 초과하는 무기한 정학을 말한다.

제 4 절 장애학생 지원

제97조의2(장애학생 지원)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16.06.26)

제 7 장 등록금

제 8 장 특종생

제 9 장 자체평가

제117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9. 2.27.)

제 10 장 학칙개정

- 제118조(학칙개정) 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교수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09.02.27, 19.04.15)
- ② 학칙개정은 학사운영위원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학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11.12.30)
- ③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은 정지된다.(16.10.18)

제 3 편

전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재입학, 전과, 전학 및 편입학

제3장 등록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5장 교과과정

제6장 수업

제7장 실험 및 성적

제8장 복수전공, 연계전공

제9장 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

제10장 자매결연 대학과 학생교류

제11장 학력증명서 발급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20. 02. 18 훈령 제2339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분 이동, 교과 이수, 수업, 제증명 발급 및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1. 8.29, 02.11.21, 07.11. 7, 19.12.26.)

제 2조(적용) 본 대학교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특히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02.11.21)

제 2 장 재입학, 전과, 전학 및 편입학

제 3 장 등 록

제 4 장 휴학 및 복학

제 9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학과)장을 경유, 학장에게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95. 7. 1)

② 학칙 제53조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수학상 지장이 현저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 하거나 학부(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02.11.21, 07.11. 7.)

③ 칙 제54조의 휴학 기간은 학기 단위를 말하며, 그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때에는 휴학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7.11. 7.)

④ 군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 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창업 휴학자는 본인 또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위하여 휴학 하는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하고, 창업을 위한 휴학은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98.04.16, 13.02.26, 14.06.23)

제10조(복학) ①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복학 기간 내에 학장에게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95. 7. 1, 02.11.21)

② 복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하여야 한다.(00. 7. 26) 다만, 군 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③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95. 7. 1)

④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복학허가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여 학칙에 규정된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수업 일수를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00. 1. 27, 00. 7. 26)

제 5 장 교과과정

제 1 절 교과과정의 편성

제11조(편성) ① 교과과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장이 안을 작성하고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 사유와 신 구 교과목의 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7.02.20.)

- ②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을 2학기 이상 개설할 때에는 선, 후 순위를 I, II...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과과정)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별책(학사 편람)과 같다.

제 2 절 교과목 이수

제 6 장 수 업

제 1 절 수업계획

제 2 절 수업시간표

제 3 절 수강신청

제17조(수강 신청 및 학점) ① 재학생 및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매 학기 수업 개시 전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전 편입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수강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97. 8. 12. 02. 3.14, 19.2.15.)

- ② 매 학기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TOPIK 3급이하 자격자는 5번째 학기부터 상한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으로 한다. 다만 8학기 이후에는 1학점으로 한다.('94. 5. 31개정, 05. 8.11, 12. 2. 27, 13.05.27, 18.12.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학생의 경우 학기당 수강 신청 하한학점과 관계없이 원하는 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1.9.27)

- ④ 모든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전 학점 및 성적은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97.08.12, 02.03.14, 14.06.23)

- ⑤ 재학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강 신청 학점의 타당성 여부(제한 및 초과)
2. 선수 과목의 이수 여부
3. 교직과목 선택자인 경우 기본 이수 영역 과목 이수 여부

제17조의2(수강신청 학점이월) 매학기 수강신청 기본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3학점 범위 내에서 직후학기(휴학생의 경우 복학학기)에 한해 추가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3.06.24, 17.08.02)

제17조의3(수강 사전신고 등)(신설, 19.03.28) ① 강의 담당 교원이 수강생의 부모인 경우 부모인 교원은 사전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수강 신청의 추가·변경 및 취소) ① 수강 신청의 추가 및 변경은 매 학기 수업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와 교과 이수상 부득이한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00. 7. 26, 05. 1.31)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1과목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하한선은 지켜야 한다.(97. 8. 12. 항 신설, 02. 3.14, 04. 1.17, 08. 5.27, 16.06.16 개정)

제19조(삭제)

제19조의 2(동일 교과목 지정) ① 동일 학부(학과) 내의 교과목 중 교과과정의 개정으로 학수 구분, 학수번호, 설강시간 및 학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교과목 명칭이 동일한 과목은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명칭은 달라도 교과 내용 및 범위가 동일한 과목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교과목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학장은 이를 취합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1. 8. 29, 05. 1.31)

③ 동일 과목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교양과목은 해당 대학 행정실장이, 전공과목은 해당 학부(학과)장이, 교직과목은 교원양성지원센터장이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5. 7. 1, 05. 1. 31, 11.2.18)

제 4 절 출석출강

제20조의1(출석인정)(18.09.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13.06.24)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13.06.24)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13.06.24)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13.06.24)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13.06.24)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등)(13.06.24)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신설, 18.09.20.)
8. 다음의 경우(신설, 18.09.20.)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3일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3.06.24, 18.09.20.)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13.06.24, 18.09.20.)

제21조(교수의 출강) 학장은 교수의 출.결강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강의 상황보고) ① (삭제)

② 학장은 매월 강의 실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 총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95.7.1, 02. 3.14, 개정)

제23조(결강 및 보강) ① 교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 계획을 수립, 관련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은 그 사실과 보강 계획을 즉시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한다.(18.09.20.)

② 보강은 대면수업 외에 온라인수업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학기별 온라인 보강 한도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18.09.20.)

제 5 절 강의계획서

제 6 절 교외 교육 및 실습

제 7 장 실험 및 성적

제26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배점은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담당 교수가 정하여 매 학기초 이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정기 시험(중간 또는 기말 시험)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평가한다.

③(삭제) (95. 7. 1)

제26조의2(성적 보고)(신설, 19.03.28) ① 자녀가 수강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채점표 제출) 교수(강사 포함)는 매 교과별로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를 작성하여 관련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1. 8. 29, 03. 9. 1)

제27조의 2(성적의 유보 인정) ① 교육 실습 및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당해과목에 대한 성적 유보 인정 신청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성적 유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학생의 성적은 이를 유보하였다가 복학 후 수강 신청한 학기에 인정한다.

제28조(평점평균 산출) ① 학칙 제71조에 의한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

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2. 2. 27)

- ②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재 이수한 경우의 성적 평균은 재 이수 전 학점 및 성적을 제외하고 산출한다.(14.06.23)
- ③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신설 12. 2. 27)
1. 평점 합계
 2. 학점 합계
 3. 성적 취득 과목 수

제28조의2(평점평균에 대한 실점환산) 성적 평점평균에 대한 실점환산점수는 [별표 5]의 평점평균의 실점환산 기준표에 의거 산출한다.(신설 12. 2. 27)

제29조(성적의 처리) 정보전산원장은 매 학기 학생의 성적을 소정 기간 내에 처리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1. 8. 29, 03. 9. 1)

제30조(성적경고) ① 교무처장은 매 학기 성적 경고 대상자에게 성적 경고(간호대학,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생과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한다)를 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01. 8. 29, 03. 9. 1, 05. 1. 31, 15.02.27)

- ② 제17조 제항에 의한 재 이수로 취득한 성적에 불구하고 제1항의 성적 경고는 유효하다.(14.06.23)
- 제31조(학수표 처리 및 학적부 정리) ① 학사관리과장은 학수표의 성적을 당해학기 수강신청 내용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학적부에 정리하여야 한다.(01. 8. 29)

- ② (삭제) (01. 8. 29)

제32조(성적의 통지) 교무처장은 기말 시험 종료 후 40일 이내에 당해 학기 성적을 학생 및 소속 학부(학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01. 8. 29, 03. 9. 1, 19.12.26)

제33조(성적의 열람 기간) 학생의 성적 열람 기간은 당해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3주 이내로 한다.

제34조 (삭 제) (02.11.21)

제35조(성적 정정) ① 학생이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 열람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이의 및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94 5. 31, 19.08.01)

- ② 학장은 제1항의 기간 경과 후 성적평가의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교무처장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즉시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19.08.01)

1. 담당 교수의 사유서
2. (삭제)(99. 5. 11)
3. 답안지
4. 채점표 사본
5. (삭제) (99. 5. 11)
6.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 ③ 총장은 제2항의 성적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정정한다.

제 8 장 복수전공, 연계전공(02.11.21)

제 9 장 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99. 5. 11)

제 10 장 자매결연 대학과 학생교류

제 11 장 학력증명서 발급

출 석 인 정 원

절-----취-----선

출 석 인 정 허 가 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제 4 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2장 입학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학점 등

제4장 학위수여

제5장 공개강좌, 연구생,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6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제7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제8장 직제와 대학위원회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20. 01. 07 규칙 제2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기본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극히 정심하게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01. 6. 13)

제2조(학위과정)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01. 6. 13)

② 제1항의 석사학위과정 간호학과에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한 전문 간호사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06. 2.14.)

③ 제1항의 과정 외에 본교와 국내연구소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공동 석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변경 06. 2.14.)

제3조(학생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문간호사 과정(입학정원내)의 자격종류별 학생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01.6. 13, 02.12.13, 단서 신설 06.2.14, 08.2.26, 09.11.16, 10.10.20, 10.10.25, 11.10.19, 11.12.01, 12.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99. 1. 6)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01. 8. 29, 14.10.30)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 ③ 학과의 신설, 분리, 합병, 명칭변경, 폐지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학과의 신설 및 분리의 경우에는 교원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99. 1. 6)

제 2 장 입 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내로 한다.(00. 7. 26)

제5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다만, 본교 조교수 이상 교원의 입학은 불허한다.(12.5. 18).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01. 6. 13)

가. 4년제 대학, 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01. 8. 29)

나.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전문간호사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가목 또는 나목의 자격이외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신설 06. 2.14)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04. 1. 17)

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다.(99. 5. 11, 04. 1. 17)

- 제9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4학기 이내) 및 창업 기간(통산 4학기 이내)은 예외로 한다.(99.01.06, 00.01.27, 13.02.26, 14.06.23)
- ③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창업 휴학자는 본인 또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8세 이하에 한하고, 창업 휴학은 창업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4.06.23)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학점 등

- 제10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2년6월(5학기)이상으로 한다.(01.6.13, 05.8.11)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00. 7. 26, 01. 6. 13, 13. 2. 26)
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석·박사학위통합과정 1년 이내 단축(00. 7. 26, 02. 12. 13, 12. 02. 27, 13. 2. 26)
 2. 석·박사학위통합과정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28 이상인 자: 6개월 이내 단축(97. 8. 5, 00. 7. 26, 02. 12. 13, 12. 02. 27, 12. 07. 31, 13. 2. 26)

- 제11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01. 6. 13, 02. 12. 13)
-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12조(수업일수) 본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00. 7. 26)

제13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4조의 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교육과정) ①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2. 02. 27)
- ②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09. 12.17)

제15조(성적평가) 본 대학원의 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협동강의) ① 학생이 본 대학원 재학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내·외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설강 및 수강) ① 석사학위 과정의 기초과목은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과 공동 설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과정 재학중 석사학위과정의 설강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97. 8. 5)

③ (삭제 13. 2. 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 과정에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02.12. 13, 13. 2. 26)

제18조(이수학점) ①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학위 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 과정은 36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33학점으로 하고, 유사학과 또는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97.8.5, 01.6.13, 05.8.11)

② 외부 기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은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05. 1.31신설)

③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일 때 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00.1. 27, 05. 1.31 항 변경, 12. 02. 27)

④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석사학위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석사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02. 12. 13신설, 05. 1.31 항 변경)

⑤ 입학당시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다.(00. 1. 27, 02. 12. 13, 05. 1. 31항 변경)

⑥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에 따른 이수학점 인정은 대학 간의 협정에 의할 수 있다.(신설09.12.17)

제18조의 2(전적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의 대학원(비학위석사과정 연구과정생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99. 5. 11)

② 제1항의 학점 인정은 동일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한다.(01. 6. 13)

제18조의3(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과에서 심사하여 동일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5.07.02)

제19조(학기당 취득학점수)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하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0. 7. 26, 13. 2. 26)

제20조 (삭제)

제21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각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97. 8. 5)

제22조(수료증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 장 학위수여

제23조(석사학위 수여) ① 석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한다.(97. 8. 5, 02. 12. 13)

1. 본 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12. 02. 27)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02. 12. 13)
3. 제10조 제1항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02. 12. 13)
4.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00. 12. 1, 신설. 02. 12.13)
5.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15.01.14)

②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술 학위를 수여한다.(02. 12. 13, 신설)

제24조(석사학위 종합시험)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4과목 이상을 실시한다.

제25조(석사학위 외국어시험) ① 석사학위과정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99. 1. 6, 02. 12. 13)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본 대학원 입학시험 중 영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 및 본교 언어교육부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99. 5. 11, 00. 1. 27, 13. 2. 26)

제26조(석사학위 논문심사) 석사학위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사계의 권위자 또는 본교 교수)이 심사한다.(97.8.5, 02. 2. 27, 04. 9. 9)

제27조(삭제)(97. 8. 5)

제28조(박사학위 수여) 박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포함)을 이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한다.(97. 8. 5, 02. 12. 13)

1.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12. 02. 27)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02. 12. 13)
3. 제10조 1항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00. 12. 1, 신설, 02. 12. 13)
4. 입학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02. 12. 13, 신설)
5.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02. 12. 13)
6.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15.01.14)

제29조(박사학위 종합시험)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6과목 이상을 실시한다.

제30조(박사학위 외국어시험) ① 박사학위 과정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99. 1. 6, 02. 12. 13)

② 제1항의 시험과목 이외에 학문의 특성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과목으로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서반아어, 한문 중 택일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99. 1. 6, 02. 12. 13)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본 대학원 입학시험 중 영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 및 본교 언어교육부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99. 5. 11, 00. 1. 27, 13. 2. 26)

제31조(박사학위 논문심사)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사계의 권위자 또는 본교 교수)이 심사한다.(97. 8. 5, 02. 2. 27, 04. 9. 9)

제32조 (삭제) (97. 8. 5)(사계의 권위자 또는 본교 교수)이 심사한다.

제 5 장 공개강좌, 연구생,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 6 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제38조(지도교수) ①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공동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지도교수 포함)로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제 8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40조(교수) 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제41조(학과 주임교수) 본 대학원에 제40조의 교원 중에서 각 학과마다 1인의 학과 주임교수를 둔다.

제42조(대학원위원회) ①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01. 8. 29, 02. 2. 27, 03. 9. 1, 04. 9. 9)

제43조(위원의 임기) 임명에 의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97. 8. 5)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45조(회의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의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46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입학

제3장 성적평가 및 교과목 이수 등

제4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5장 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19. 12. 26 훈령 제232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2 조(필답고사) 본 대학원의 입학생 선발 시험 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별	영 어	전 공	구술고사	합 계
석사학위	100점	200점(4과목×50점)	50점	350점
박사학위	100점	200점(4과목×50점)	50점	350점

제 3 조(구술고사) 구술 고사는 전공 지식에 대한 습득 정도와 학생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며, 입학시험 반영배점은 50점으로 한다.(99.11.30)

제 4 조(특별전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전임교원(02. 3. 14)
2. 성적우수자(01. 6. 13, 04. 1. 17)
3. 지원학과 조교수 이상 교원의 추천을 받은자(12.12.21)
4. 당해 전공분야 연구 및 전문직에 3년(박사학위과정은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04. 1. 17, 12.12.21)

② 특별전형의 방법 및 선발인원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5 조(지원)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졸업자는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98. 12. 22)

②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출신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박사학위과정(학과 또는 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98. 12. 22, 04. 1. 17)

제 3 장 성적평가 및 교과목 이수 등

제 6 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시험 성적, 실험 및 연구 보고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교과목별 성적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성적 등급 C⁺ 이상을 급제로 한다. (12. 2.27)

등 급	평 점	비고 (100점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F	0	70점 미만

제7조(학과 시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기말 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동 강의) ① 본 대학원 학생이 타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고, 총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30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02. 12. 13)

제9조(해외유학)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 대학(교)의 대학원(공인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대학)에 유학하여 수학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에 유학 계획서와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유학 승인서 각 2부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학한 자가 유학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12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18학점 이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30학점 이내에서 인정(02. 12. 13)
2. 이수과목, 학점 및 성적 인정은 「전북대학교와 타 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02. 3. 14, 13. 2. 26)
3. 유학 기간은 수업연한에 산입하되, 학점취득을 위한 유학이 아닐 때에는 휴학 처리
4. 유학기간 중에도 「전북대학교와 타 대학간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02. 12. 13, 13. 2. 26)

제10조(선수 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사학위과정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한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사학위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 계열에 입학한 자는 동일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 ②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 석사학위과정과 상이한 학과(전공)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과(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학·석사학위과정에서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은 전공과목 이수에 앞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이수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과목과 전공과목을 동일학기에 이수할 수 있다.(00. 12. 1)
- ④ 학과주임교수는 학생의 선수 과목 지정 결과를 입학 후 2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과목을 면제한다.(98. 12. 22)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 학점은 12학점 이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항 신설 13. 2. 26)

제11조(전적 학점) ①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 인정은 석사 학위 과정은 9학점 이내로, 박사 학위 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업 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학점 취득)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박사 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10.2.26, 12.5.18, 13.2.26)

② (삭제 14.02.20)

제13조(타 학과 과목의 이수) 수료에 필요한 전공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본 대학원, 본교 특수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의 타 학과 또는 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14.02.20, 18.02.28)

제13조의1(학과(전공)변경) 지도교수가 학과(전공) 소속을 변경하거나 타 학과(전공) 겸임을 하는 경우, 동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면 지도교수와 동일한 학과(전공)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13. 6. 12)

제13조의2(전과)(신설, 19.12.26)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1. 전과신청서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단, 지도교수가 미정일 경우 학과 주임교수 동의서)
3. 성적증명서

② 전과는 일반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과의 전과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전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소속 전공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이 변경 학과 전공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설강 및 수강) ① 학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석사 학위 과정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강 자격은 본 대학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로 한다.(12. 2. 27)
2. 학기당 수강 학점수는 2과목 6학점 이내로 한다.(02. 12. 13)

② (삭제 13.2.26)

제15조(담당교과목 수) 교과목의 담당은 1인당 매 학기 1교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1과목을 추가로 담당할 수 있다.(10.2.26)

제 4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5 장 학위논문

제18조 (삭제)

제18조의 1(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작성계획서를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석사는 6개월, 박사는 1년 전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0.2.26, 10.12.08)

제18조의 2(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① 학칙 제38조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회는 학생의 학위 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를 지도하여야 한다.(10.2.26)

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지도교수의 경우 비전임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10.2.26)

제19조(학위논문 심사신청) 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석사 학위논문은 매년 5월 15일 및 11월 15일까지, 박사 학위논문은 매년 3월 30일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지도 교수 추천서 1부.
3. (삭 제) (02. 12. 13)
4. 심사용 논문 3부(박사 학위논문은 5부)
5. (삭제)98. 12.22
6. 학술지 게재 논문 별쇄본 각 1부.(박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별표 3〕로 한다.(2010.12.08)
8.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1부.(15.01.14)

②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2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98. 4. 16, 01. 6. 13)

제20조(논문의 공개발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자는 계열 또는 학과별로 실시하는 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 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01. 6. 13)

제21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은 [별표 2]의 학위논문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부,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4부와 논문내용이 수록된 학위논문 최종 원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학위논문원문파일 제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학과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은 4부, 박사학위 논문은 5부(98.12.22, 02.3.14, 05.6.10, 05. 7. 8, 09. 6. 4, 09.11.16, 10.2.26, 19.08.01)

제 6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관리조직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관리조직 규정

제정 1994. 09. 14.

개정 2000. 09. 07.

개정 2006. 02. 06.

개정 2017. 09. 20.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하 “대학”라 한다)의 관리조직과 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 학장은 전북대학교 학칙 제 7조에 따라 대학의 행정을 통괄하고, 대학과 학사과정의 학생교육과 부설기관과 부대시설의 운영을 관장한다.

제3조(부학장) 학장이 임명하는 부학장은 교무, 학생, 연구부학장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 ① 교무부학장은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학생부학장은 학생지도 및 교수지원 업무와 함께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과정의 운영을 관장하며, 학과장을 겸임한다.
- ③ 연구부학장은 연구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강생체과학연구소장을 겸임한다.
- ④ 치의예과장은 치의예과 학생지도 및 교수지원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회의) ① (구성)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칙 제32조에 따라 치과대학 교수회의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소집) 교수회의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학장은 교수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의결 정족수) 교수회의는 재적회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의결사항)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수회의나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대학위원회) ① (구성) 대학의 학위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을 위원장으로 교무, 학생, 연구부학장과 치의예과장 및 치과병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선출직위원은 약간 명으로 교수회의에서 선출하여 학장이 임명하되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 ② (회의) 대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 대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대학의 학위과정의 신설 및 명칭 변경, 폐지 등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대학 인사, 시설, 예산에 관한 사항
 - 전임교원과 보조인력 선발 및 배정
 -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 교육·연구부문에 대한 예산 및 지원금 배정
5. 대학 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연구 활동, 기자재 및 시설의 지원
- 나. 장학사업
6. 대학 학생장학금 지원 및 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수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연구학술위원회 및 홍보출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두며, 기타 대학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기 따로 규정한다.

제7조(부설기관) ①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구강생체과학연구소, 치의학평생교육원 및 치의학도서관, 임상술기센터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기 따로 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4. 9. 14, 2000. 9. 7, 2006. 2. 6, 2017. 9. 2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00년 9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06년 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술정보관리위원회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운영위원회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건축위원회 규정 등은 폐지한다.

제 7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부설기관 규정

1. 치의학교육실 규정
2. 연구지원실 규정
3. 치의학임상술기센터 규정
4. 구강생체과학연구소 규정
5. 치의학평생교육원 규정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지원실 규정

제정 2008. 01. 01.

개정 2010. 02. 05.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육지원실(이하 지원실)에 대한 사항을 다루며, 치의학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교육실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위원으로는 교무부학과장과 교육실장을 두며,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이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교육실은 운영책임자인 교무부학과장, 실무책임자인 교육실장과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교육실은 PBCL부, 실험실습부, 인문사회치의학부, 주제강의부, 논문연구부, 임상술기평가부의 부서로 구성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① 교육실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기획, 연구개발, 조정, 지원
 2. 연간 교육일정 수립, 조정 및 시간표작성
 3. 각 교육프로그램별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관리
 4. 교육방법 연구 및 개발 지원
 5. 교육평가 연구 및 개발 지원
 6. 교육매체 연구 및 개발 지원
 7.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과 관련된 교육지원업무
 8. Faculty development program 개발 및 운영 지원
 9. 교육과정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업무
-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과정위원회에 항시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각 부서별 책임자의 임무)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PBCL부 책임자

1. PBCL 운영 계획 수립 및 Moderator 조정
2. PBCL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② 실험실습부 책임자

1. 학생 기초치의학 및 임상전단계 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학생 임상실습관련 장비 및 기구, 재료의 구매 및 관리
3. 학생 실험실습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③ 인문사회치의학부 책임자

1. 인문사회치의학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2. 인문사회치의학 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④ 주제강의부 책임자

1. 연간 주제강의 교육일정 수립 및 조정
2. 주제강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업무

⑤ 논문연구부 책임자

1. 연간 논문연구 진행, 심사, 발표회 일정 수립 및 조정
2. 논문연구 결과 발표 및 심사에 관한 기타 업무

⑥ 임상술기평가부 책임자

1.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평가일정 수립 및 운영
2. 임상술기평가와 술기센터 운영에 대한 기타 업무

제5조(회의) 회의는 교무부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0. 2. 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지원실 규정

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루며, 치의학 연구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지원실은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위원으로는 연구부학장과 연구실장을 두며, 연구학술위원회 위원이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지원실은 운영책임자인 연구부학장, 실무책임자인 연구실장과 연구지원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권한)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연구 인력,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및 지원
- ② 연구기자재(장비) 구축 관련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
- ③ 신입 치의학연구자 연구비 수주 지원
- ④ 기초 및 임상치의학 공동연구 확대 방안 마련 및 지원
- ⑤ 특성화된 소규모 융복합 핵심연구 클러스터 구축 지원
- ⑥ 대단위 집단연구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적 지원
- ⑦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역량 평가
- ⑧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연구부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임상술기센터 규정

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임상술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루며, 학생의 임상술기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센터는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 ② 당연직위원으로 센터장과 간사를 두며, 임명직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에는 운영책임자인 센터장, 실무책임자인 간사와 지원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권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치과 의사 실기시험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② 치과 의사 실기시험 문항개발, 교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 ③ 학생 실습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지원
- ④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비한 최종역량 평가
- ⑤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부설 구강생체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1983. 06. 04

개정 1989. 06. 12

개정 1996. 06. 10

개정 1997. 10. 27

개정 1998. 08. 12

개정 2003. 04. 30

개정 2006. 02. 06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치의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 부설 구강생체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기초 및 임상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 ② 산학연 교류 및 연구 영역
- ③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사회봉사
- ④ 초청강연회 및 학술회의
- ⑤ 기타 이 연구소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이 연구소에는 기획.운영분과, 연구분과, 교육분과를 둘 수 있다.
- ② 기획.운영분과는 연구소의 운영, 기획 및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③ 연구분과는 치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한다.
- ④ 교육분과는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임원)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소장 1인
- ② 분과장 3인
- ③ 간사 1인

제6조(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 ①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 ①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 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연구소 내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연구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연구소 운영 경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83. 4. 1989. 6. 12, 1997. 10. 27, 1998. 8. 12, 2003. 4.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06. 2. 6)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2006. 02. 06

개정 2019. 1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 ① 치과의사를 위한 치의학관련 평생교육제공
- ② 치과보조인력을 위한 치의학관련 평생교육제공
- ③ 지역주민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 ④ 치의학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및 개발
- ⑤ 국내외 치의학 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수집 및 관리
- ⑥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 ⑦ 기타 교육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 ① 교육원에 기획부, 교육부, 홍보부 및 간사를 둔다.
- ② 기획부는 교육원사업을 기획하고, 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교육부는 치과의사·치과보조인력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홍보부는 교육원의 사업을 홍보하고, 기록관리 및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 ⑤ 간사는 각 부의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서무, 회계와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4조(임원)

- ① 교육원장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장이 되며, 교육원의 사업을 대표하여 관할한다.
- ② 각 부에 부장을 두어 해당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고,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교육원장과 각 부장, 간사 및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의 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운영 경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평생 교육과정 등)

- ① 교육원은 평생 교육과정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원장이 정한다.
- ② 교육원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소정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6. 2. 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19. 12. 18)로부터 시행한다.

제 8 편

치과대학 상설위원회 규정

1. 기획평가위원회
2. 대외협력위원회
3. 발전기금위원회
4. 입학전형위원회
5. 임상교육협의회
6. 교육과정위원회
7. 임상교육위원회
8. 학생지도위원회
9. 홍보출판위원회
10. 연구학술위원회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4. 03. 01

개정 2018. 09. 01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으로서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치의예과장, 교육실장 및 치과진료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임명직위원 중 1인을 학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필요시 위원장을 대행하게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치과대학 발전계획 수립, 발전 기획 및 평가사업
- ②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작업
- ③ 기획 및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8. 9.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으로서 치의학과장과 치의예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임명직위원 중 1인을 학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필요시 위원장을 대행하게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외협력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① 학생 해외연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② 국내외 기관의 교육, 연구 등 각종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③ 치과대학 동창회와 협력관련 계획수립 및 지원
- ④ 지역사회 진료 및 노력봉사 등 사회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 ⑤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발전기금위원회 규정

제정 2001. 01. 30

개정 2005. 02. 28

개정 2009. 06. 30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포함한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과 동창회장으로서 치의학과장을 간사로 지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선출직위원은 대학위원회와 동창회 이사회에서 각각 2인 이상 선출한다.
- ② 감사는 대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발전·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
- ② 발전기금 운영 및 집행에 대한 사항
- ③ 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정기보고 및 평가
-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수회의와 동창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1. 5. 30, 2009. 6. 30)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제정 2004. 09. 01

개정 2008. 07. 11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으로서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및 치과진료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임명직위원 중 1인을 학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필요시 위원장을 대행하게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전형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 ② 입학전형 제도 개발 및 연구
- ③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제반사항
- ④ 입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사항
- ⑤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8. 7. 1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임상교육협의회 규정

제정 2014. 03. 10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임상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위원장은 치과대학장으로서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과 치과병원의 치과진료처장, 기획조정부장, 교육부장의 7인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① 치과병원에서 실시되는 학생 임상교육 계획, 관리 및 평가 대한 사항
- ② 치과병원에서 실시되는 학생 임상교육 예산 및 지원에 대한 사항
- ③ 기타 학생 임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1993. 01. 28
개정	1994. 09. 18
개정	1996. 03. 20
개정	2000. 09. 07
개정	2003. 04. 30
개정	2006. 02. 06
개정	2007. 12. 28
개정	2012. 01. 27
개정	2013. 09. 25
개정	2016. 10. 26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 교육실장, 임상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술기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출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필요시 교육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치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와 교과과정 편성, 교육결과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 및 결정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3. 01. 28.)(1994. 09. 14.)(1996. 03. 20.) (2000. 09. 07.)(2003. 4. 30)(2006. 2. 6)(2007. 12. 28)(2012. 1. 27)(2013. 9. 25)(2016. 10. 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임상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2009. 03. 23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임상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치과병원 교육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치과병원에 개설된 진료과 겸직교원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학생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① 치의학 임상교육 실시 계획,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
- ② 치의학 임상교육 자료의 개발 및 편찬에 대한 사항
- ③ 치과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실습과목의 관리 및 학생지도에 대한 사항
- ④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치과병원 교육부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치의학과장과 치의예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하고, 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한다.
- ③ 학생대표로서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과 학생회장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다음을 심의한다.

- ① 학생 장학금지원 규정의 제정, 개폐에 대한 사항
- ② 장학생 선발, 추천, 장학기금 배정에 대한 사항
- ③ 학생 상담지도에 대한 사항
- ④ 학생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
- ⑤ 학생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으로서 학생부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홍보출판위원회 규정

제정 2009. 03. 23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홍보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학생부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임명직 교수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홍보 및 출판업무를 위하여 다음을 심의한다.

- ① 치과대학 대내외 홍보 및 출판에 대한 사항
- ② 치과대학 제반정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
- ③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학술 업적 기록에 대한 사항
- ④ 학생의 교육 및 연구·학술활동 기록에 대한 사항
- ⑤ 치과대학 역사자료실 관리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06. 02. 06

개정 2020.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연구부학장과 연구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임명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부학장이 되며, 필요시 연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치의학 연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①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비 및 연구기자재 지원에 대한 사항
- ② 연구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의 선정, 배정,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 ③ 학생, 연구원 및 전임교원의 대내외 학술활동에 대한 사항
- ④ 연구·학술활동 업적 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제 9 편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기타 규정 및 회칙

1. 학장선출 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2. 교수상조회 회칙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 1990. 01. 18.

개정 1994. 09. 14.

개정 1996. 03. 20.

개정 2002. 02. 22.

개정 2003. 03. 27.

개정 2004. 12. 22.

개정 2017. 11. 29.

개정 2019.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학(원)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장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한다)라 함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학(원)장 임용후보자 (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라 함은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호도조사에서 선정된 이를 말한다.
3. 선거권자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중립의무) 누구든지 임용후보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원)장의 권한대행) 현 학(원)장이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총장이 차기 학(원)장을 임명하기 전날까지 교무부학(원)장이 학(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원)장과 교무부학(원)장 모두 접수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접수하지 않은 부학(원)장 중의 선임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학(원)장 및 부학(원)장이 모두 후보자로 접수한 경우에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발령 최우선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현 학(원)장의 임기만료 50일 전에 교수회의에서 정한 3인의 교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장 학(원)장 후보자 공모 공지 등

제6조(후보자 공모 공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학장 후보자 공모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후보자 지원서 제출)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공지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접수일로 한다.

1. 학장 후보자 지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대학 발전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8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장으로서 요구되는 학식과 덕망, 리더십과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장 임기 종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2. 공개모집 공지일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제9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과대학(원) 소속 교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단과대학(원) 소속 교원에게 자신이나 타인이 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함을 청탁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단과대학(원) 소속 교원에게 타인이 임용후보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허위 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행위
 5. 제3자를 통해 임용후보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시정명령,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출절차 및 방법

제10조(선출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용후보자선출을 위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를 현 학(원)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후보자 선정 교수회의는 재적회원(단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장기출장자 제외)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② 학(원)장 임용후보자선정 교수회의에서 입후보자 중 1인에게 직접, 비밀투표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를 임용후보자로 한다.
- ③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임용후보자로 선출한다. 결선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용후보자로 한다.
- ④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선출절차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에 입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소견발표와 질의응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기타 선거권자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임용 추천) 현 학(원)장은 학(원)장 임용후보자 선출이 끝난 뒤 지체 없이 당선자를 차기 학(원)장 임용후보자로 총장에게 추천한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상조회 회칙

제정 1982. 04. 00

개정 1994. 09. 14

개정 1996. 03. 20

개정 2006. 02. 06

개정 2007. 06. 05

개정 2007. 08. 29

개정 2007. 12. 28

개정 2018. 12. 28

개정 2020. 03. 01

제1조(명 칭) 본 회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치과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인보상조를 위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학 내에 둔다.

제4조(회 원) 본 회의 회원은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한다.

제5조(사 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회원 간의 친교활동 전개(친목모임, 체육행사 등)
- ② 회원의 퇴직금 및 경조금 지급
- ③ 회원의 복지사업(기금대부 활용 등)
-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임 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이사: 4인(상임이사 포함)
- ③ 감사: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운영을 위한 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부재 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 회 사업과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 ① 회장 및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안건을 심의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 선출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③ 잔여이사 3명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이자 특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 ② 본 회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 ③ 본 회의 재정은 회장명으로 보관하고, 상임이사가 회장의 명을 받아 관리한다.
- ④ 본 회 재정은 감사의 요구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 본 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들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사업세칙) 사업목적에 명시한 세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82. 4. 1994. 9. 14, 1996. 3. 20, 2006. 2. 6, 2007. 6. 5, 2007. 8. 29, 2007. 12. 2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8년 1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0 편

부 록

1. 의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2. 의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3. 기구표

전북대학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05. 4. 13	규칙 제52호	개정 12. 6. 25	규칙 제127호
개정 06. 4. 19	규칙 제60호	개정 13. 2. 26	규칙 제137호
개정 08. 2. 26	규칙 제74호	개정 14. 2. 20	규칙 제152호
개정 09. 1. 7	규칙 제82호	개정 15. 9. 14	규칙 제169호
개정 09. 2. 27	규칙 제84호	개정 17. 12. 28	규칙 제199호
개정 10. 2. 26	규칙 제97호	개정 18. 2. 28	규칙 제201호
개정 12. 5. 18	규칙 제125호	개정 19. 1. 08	규칙 제21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6. 4.19.)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및 학위과정) ①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전문석.박사학위 통합 과정, 전문석사.학술박사 복합학위(이하“복합학위”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다.(06. 4.19, 08. 2.26)

제4조(학생정원) 본 대학원의 학생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06. 4.19.)

1.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10명(신설 06. 4.19, 09.1.7)
2.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40명(호 변경 06. 4.19, 09.1.7)
3. 각 대학원은 입학정원 내에서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08. 2.26)

제 2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수업일수

제5조(수업연한) ① 대학원 각 과정의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 4년
2. 전문박사학위과정 : 2년
3. 전문석.박사학위통합과정 : 4년(신설 06. 4.19.)
4. 전문석사.학술박사복합학위과정 : 7년(신설 08. 2.26)

② (삭제 14.02.20)

제6조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최소 수업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12년(휴학기간 포함)으로 한다.(신설 08. 2.26)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항번호 변경 08. 2.26)

제7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2주(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제8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개시일로 한다.

제9조(입학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

가. 전문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삭제 06. 4.19.)

다.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의학전입문시험(MEET)에서,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치의학입문 시험(DEET)에서 당해 년도에 일정한 성적을 취득한 자(06. 4.19.)

라.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기타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신설 06. 4.19)

2. 전문박사학위과정

가. 의학전문대학원 (06. 4.19.)

의사면허 소지자 중 의무석사학위 또는 의학석사학위 소지자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06. 4.19.)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중 치의학전문석사학위 또는 치의학석사 학위 소지자

3. 전문석·박사학위통합과정 (신설 06. 4.19.)

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사학위 및 의사면허소지자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사학위 및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제10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06. 4.19.)

② (삭제 06. 4.19.)

제11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한 입학예정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06. 4.19.)

②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신설 06. 4.19.)

제12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 등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의2(복합학위과정생 선발 및 등록)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중 입학정원의 5%이내에서 복합학위과정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복합학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복합학위과정생으로 등록한 자의 명단을 등록 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조신설 08. 2.26)

제13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나 중도 수료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을 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제적

제14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06. 4.19.)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 한함)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6. 4.19, 13. 2.26)

제15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학생을 제적한다.(06. 4.19.)

1.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회 이상 유급된 자 (06. 4.19.)
5.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학위 수여

제16조(전문석사학위 수여) 전문석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에 합격한 자에게 각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3의 학위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하고, 필요 시에는 별지서식 3-1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단, 논문심사를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06. 4.19, 08. 2.26, 09.1.7, 15.09.14)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 평점평균이 2.0점 이상인 자(14.02.20)
2. 제5조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3. (삭제 06. 4.19.)

제17조(전문석사학위 논문심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6. 4.19.)

제18조(전문석사학위 졸업시험) 전문석사학위 졸업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06. 4.19.)

제19조(전문박사학위 수여) 전문박사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4의 학위기에 의한 학

위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별지서식 4-1의 영문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06. 4.19. 08. 2.26, 09.1.7, 15.09.14)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14.02.20)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제5조의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소정의 납입금을 매학기 납입한 자
4. 입학 후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
5.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19조의2(복합학위 수여) 복합학위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북대학교 의치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원 학칙의 학위수여와 관련된 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학위종별에 따라 별지서식 4의 학위기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조신설 08. 2.26, 09.1.7)

제19조의3(복합학위과정 중도 포기자의 학위수여) ① 복합학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 의견서 및 학위과정 포기 신청서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대학원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복합학위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복합학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석사 또는 치의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08.2.26, 개정 10.2.26)

제20조(전문박사학위 종합시험) 전문박사학위 종합시험은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실시한다.(06. 4.19.)

제21조(전문박사학위 외국어시험) ①전문박사학위 과정 외국어 시험과목은 일반영어 또는 전공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06. 4.19.).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또는 각 대학원 입학시험 중 영어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 및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06. 4.19.)

제22조(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 ①전문박사학위 논문은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6. 4.19.)

- ②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과와 학점이수

제23조(교과) ① 본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② 복합학위과정은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과 대학원 학술박사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과정이며,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신설 08. 2.26)

제24조(이수학점) 본 대학원 과정별 교과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80학점 이상(단, 유급 및 휴.복학으로 인한 2019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는 174학점 이상)(신설 06. 4.19, 17.12.28)

2.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160학점 이상(호 변경 06. 4.19.)
3. 전문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호 변경 06. 4.19.)
4. 전문석.박사학위과정은 60학점이상 (신설 06. 4.19.)
5. 의학복합학위과정은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80학점 이상과 학술박사 학위과정 36학점 이상(신설 08. 2.26)
6. 치의학복합학위과정은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160학점 이상과 학술박사 학위과정 36학점 이상 (신설 08. 2.26)

제24조의2(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12조2에 의하여 복합학위과정에 선발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복합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조신설 08. 2.26)

제24조의3(학제전환에 따른 학점취득 인정) 2017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제전환으로 인하여 유급자 및 휴·복학자가 해당 학년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의.치과대학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신설 17.12.28)

제25조(학기당 취득 학점 수) 본 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은 매학기 24학점(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30학점), 전문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취득할 수 있다.(06. 4.19.)

제26조(수료성적 및 유급) ① 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은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그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1.87점 이상 이어야한다. 다만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 학점의 3분의 1이상이 C°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유급되며,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06. 4.19, 09. 2.27, 14.02.20, 18.02.28)

②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 재학생은 당해 학년에 배정된 모든 전공필수과목에 대하여 각 교과목별로 D°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1.87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학년에 배정된 전공필수과목의 3분의 1이상이 C°등급 미만일 경우에는 유급되며, 유급된 자는 당해 학년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06. 4.19., 14.02.20, 19.1.8.)

③ 전문박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별로 D°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모든 교과목의 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06. 4.19., 14.02.20)

제27조(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28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29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하되, 석사학위과정은 매 학년말로 한다.

제30조(수료증서)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협동강의) ① 본 대학원생이 재학기간 동안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06. 4.19.)

- ② 국내·외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생

제32조(논문연구생 및 연구생) ①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위 취득시까지 논문연구생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 ② 4년제 대학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허가 할 수 있다.

제33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별지서식 2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8 장 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

제34조(교수회의) ①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 ② 교수회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학원장이 된다.(12.5.18)
- ③ 교수회의는 재적교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학위과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06. 4.19.)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위과정의 신설 및 명칭변경, 폐지 등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06. 4.19.)

제36조(복합학위위원회) ① 복합학위과정생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학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복합학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08. 2.26)

제37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된 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대학교학칙」 및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06. 4.19, 조번호 변경 08. 2.26)

부 칙(규칙 제52호, 05. 4. 13)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학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 ③(동전) 현 치과대학 최저학년 과정에서 이수 학점이 부족한 경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 한다.

부 칙(규칙 제60호, 06. 4. 19)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의학전문대학원의 행위는 이 학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74호, 08. 2.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2호, 09. 1.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84호, 09. 2.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97호, 10. 2. 26)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5호, 12. 5. 18)

이 학칙은 2012. 7. 22.부터 시행한다.(12. 6. 25)

부 칙(규칙 제127호, 12. 6.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37호, 13. 2.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52호, 14. 2. 20)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성적평균 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하는 학생에 대하여 성적평균은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별표5내지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부 칙(규칙 제169호, 15. 9.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99호, 17. 1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01호, 18. 02.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10호, 19. 01. 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대학원 학위종별

대학원명	학과	학위종별	학 위 과 정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의무석사	전문석사학위과정
	의학과	의무박사	전문박사학위과정
	의학과	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전문석사	전문석사학위과정
	치의학과	치의학전문박사	전문박사학위과정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복합학위과정

전북대학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제정 05. 7. 8 훈령 제 996호

개정 09. 2. 27 훈령 제1262호

개정 13. 2. 26 규칙 제 137호

개정 14. 2. 20 훈령 제1734호

개정 15. 11. 2 훈령 제1875호

개정 17. 12. 28 훈령 제209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9. 2.27)

제 2 장 입학과 등록

제2조(선발시기) 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지원자의 입학고사는 1학기 개시 전 시행하되, 모집요강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접수개시 30일전에 공고 한다.(09. 2.27)

제3조(입학전형) 대학원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과 전형방법 및 선발 인원 등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09. 2.27)

제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09. 2.27)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전문대학원장(이하“대학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09. 2.27)

제5조(납입금 납부) 학생의 매학기 납입금과 그 납부기간은 총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대학원장은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시 교과목의 개설 학년, 학기, 학점 등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09. 2.27)

제6조의2(교과이수) ①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이수는 다음과 같다.(신설 09. 2.27)

1.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수 구분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졸업 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화선택의학)	비 고
학점	180학점 이상	174학점	6학점 이상	
	174학점 이상	168학점	6학점 이상	학칙 제 24조 제1호 단서조항 적용자

(개정 17.12.28)

2.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과목을 중복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전공선택 중 심화선택의학의 경우 영역별 취득학점 및 방학 중 이수에 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설강과목의 조정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15.11.02)
4.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년말로 한다.
- ② 치의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이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필수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년말로 한다.
- ③ 복합학위과정의 교과이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학위과정생은 의학 또는 치의학전문석사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과 학술박사과정 36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2. 복합학위과정의 학술박사과정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3. 그 외 복합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업계획) 대학원장은 다음 학기 수업계획을 전학기 수업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9. 2.27)

제8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대학원장은 전 학기 수업종료 전까지 다음 학기 수업시간표를 작성·공시하고, 총장에게 제출한다.(09. 2.27)

- ② 작성된 수업시간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 2.27)

제9조(수강신청) 재학생은 매 학기 수업 개시 전 소정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확인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및 복학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수강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적평가

제10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실험 및 연구보고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통합교육방식에 의한 교과목별 성적 산정 방식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교과목별 성적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4.02.20)

등 급	평 점	비고(100점 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D ⁺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60점 미만

- ③ 매 과목(또는 과정)별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 해당과목(또는 과정)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 한다. (09. 2.27)
- ④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P"로 낙제는 "F" 표시한다.(신설 09. 2.27)

제 5 장 수료·휴학·복학

제11조(수료) 수료는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09. 2.27)

제12조(휴학) ① 휴학의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및 수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13. 2. 26)
- ② 군 입대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임신·출산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를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한다.(13. 2. 26)

제13조(복학) ①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대학 원장에게 복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09. 2.27)

- ② 군 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 ③ 군 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복학허가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여 학칙에 규정된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수업일수를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서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6 장 학위논문

제14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 제출 6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지도 교수) ① 논문지도 교수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09. 2.27)

② 논문지도 교수는 논문제출 예정자의 논문작성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09. 2.27)

제16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심사용 논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논문 작성 요령)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 동의를 얻어 학위논문 작성요령을 따로 정한다.

제18조(논문제출) ① 심사용 논문 및 공개발표용 요약서는 학위수여예정 3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심사 완료된 논문은 학위수여예정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09. 2.27)

② 심사용 논문 제출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신청서 1부
2.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
3. 심사용 논문 5부(09. 2.27)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9조(졸업시험) ① 전문석사학위 졸업시험의 실시방법과 시기,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실시 6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단, 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시험은 4학년 2학기 수업종료 전까지 실시한다.(15.11.02)

②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 후 2년(군 복무기간은 제외)이내에 2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조신설 09. 2.27)

제20조(준용) 본 학사운영규정에 규정된 이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및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05. 7. 8 훈령 제996호)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09. 2. 27 훈령 제126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3. 2. 26 규칙 제1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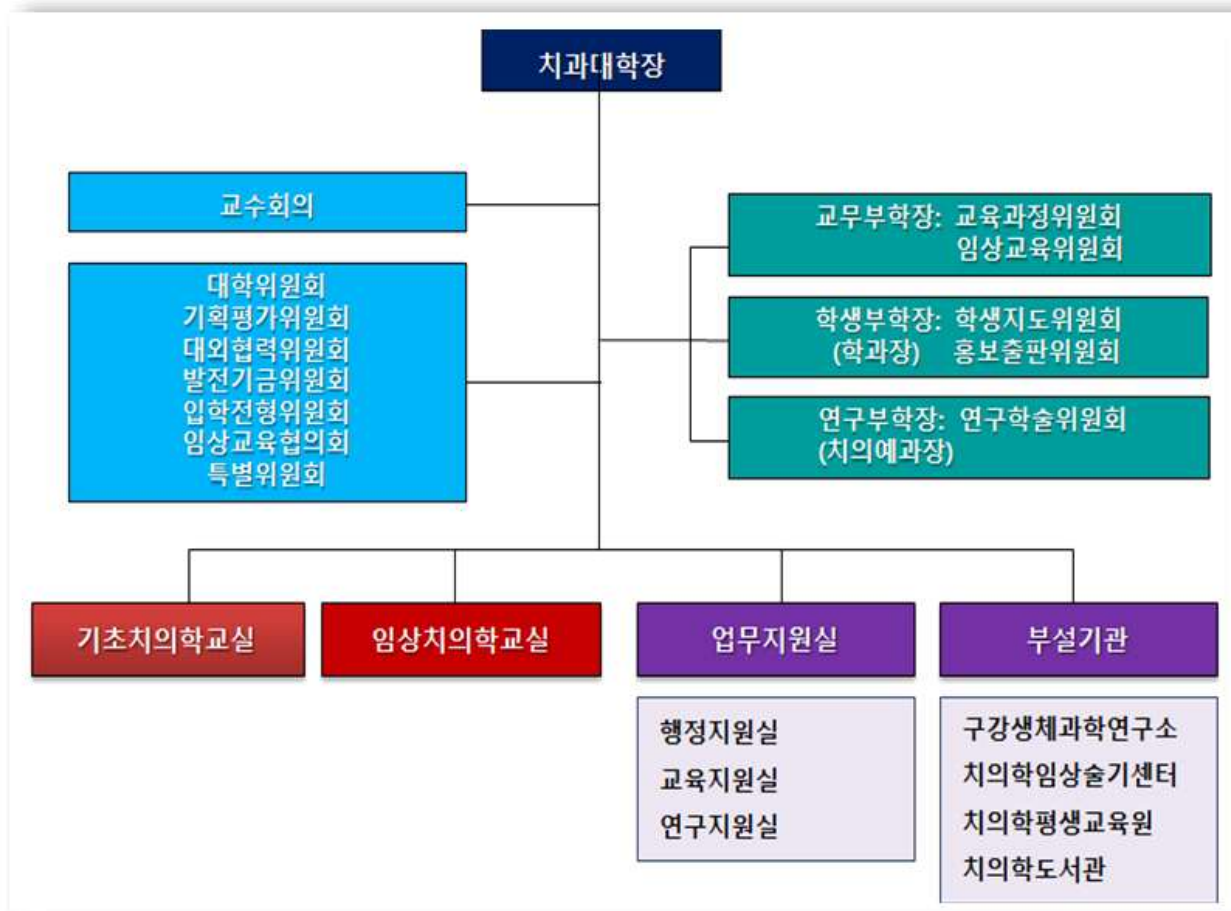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14. 2. 20. 훈령 제1734호)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1. 2 훈령 제187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17. 12. 28 훈령 제20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치과대학 기구표



발행일 : 2020년 3월 1일

발행처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발행인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김 재 곤

비매품



전북대학교 치과대학